

「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」 조례 일부 개정 계획

도로법 시행령 개정('22. 11. 1.)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추진 개요

- 조 례 명: 「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」
- 입법구분: 일부개정
- 개정사유: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함
- 개정내용: 제6조(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)

조례(현)	조례(개정)
제6조(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) 점용료는 영 제7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.	제6조(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) ①점용료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. ②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.

※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. 우리 시 조례(2021.8.10. 전부개정)는 1만원 미만 점용료는 미부과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5항 개정(2022.11.1.)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개정코자함

금후 계획

- 조례 개정 내용 검토 요청 ' 23. 12. 15.한
- 부패영향평가 ' 23. 12. 22.한
- 성별 영향평가 ' 23. 12. 22.한
- 입법예고 ' 23. 12. 25.한
- 규제 심사 및 본심사 ' 24. 1. 18.한
- 조례·규칙 및 심의회 심의 및 의회상정 ' 24. 1.
- 조례·규칙 공포 ' 24. 2.